

제427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7일(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5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5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추가)
 5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추가)
 5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추가)
 5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추가)
 5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

상정된 안건

49.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4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5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7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7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7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7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7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7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8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8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8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8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8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8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8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8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8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8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8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8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8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8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8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8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8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8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8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8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8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8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8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8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8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8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8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8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8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8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8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8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9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9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9
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9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9
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5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9
5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9
5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9
5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	9
5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심의관은 영전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유상임 장관께서 마지막 출석일 것 같아서 나중에 법안 의결 이후에 인사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최민희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50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민희 지금 하세요, 2분.

○최형두 위원 예.

지금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아마 양당에서 특별하게 증인·참고인 출석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회의 증언·감정, 청문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와 부처, 해당 기관들에 철저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미비가…… 자료제출 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이요?

○김장겸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배경훈 후보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다.

○김장겸 위원 들어왔어요?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포함한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는데 배경훈 후보자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이미 계정을 해지했다, 청문회 당일 말로 설명하겠다……

말로 때우고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김민석 후보자의 전철을 아마 밟아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청문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자료 요청을 무시한 채 청문회 당일만 버티겠다는 김민석 총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최형두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고발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 후보자는 지명된 지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LG AI연구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고위 임원이면서도 정부 고위직에 내정된 인물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부 정책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일정과 자료 요구안 의결을 하는데 이번 청문회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보자 측의 전향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야당 간사와 야당 위원께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정원장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실시됐고 향후 14, 15, 16, 17 이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는 1000건 정도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때 당시에 야당이 전처, 현처 또는 전처의 엄마를 중인 채택하지 않았고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가 2배 이상이 많았고 충실히 답변을 했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함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결을 하면, 자료제출을 하면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자료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료제출을 지금부터 안 하고 있다라고 가상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정치 공세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배경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 증인·참고인 없이 정책질의와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있다면 후보가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없는 얘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처리 전이고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경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부에서 검증을 일차 꼼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16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오늘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 기한을 2일로 부여할 예정이므로 7명 이상 위원님들의 직인을 날인하여 늦어도 11일 금요일이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은 수석전문위원회에서 안내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60개 기관에 대하여 총 1121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1일 금요일 낮 12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증인·참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께서 증인·참고인 요청을 하셨는데 여야가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SKT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반드시 현안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참고인은 그때 아마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횡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 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 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 5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 5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 5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
- 5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9분)

○위원장 최민희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5건의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상정하려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와 의사일정 제53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월 2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를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도전문PP 등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대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대안)은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이정현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오늘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수진 의원, 이해민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를,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의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는 한편 심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우리가 과학기술 투자의 신속한 결정, 신속한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제도에 따라서 기재부가 또다시 이를 예비타당성조사로 해서 2년, 3년씩 더 지연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의 끝에 이런 신속한 연구 R&D 예산은 과기부가 신속하게 심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법안입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우리가 예산심사소위를 통해서 많이 논의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예결위에서 막혀서 또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서 진행하지 못했던 R&D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안은 기재부가 동의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요. 아주 매우매우 중요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5분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R&D 예타 정상화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신 최형두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재부가 주도한 예타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통과율도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술 발전 적시성을 저해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의 초격차 확보와 승자 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에 R&D 예타 심의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계 전문가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힘을 실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에 두 차례 소위 논의가 있었는데도 법안이 계속 보류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1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것을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하반기가 되어서야 그래도 이제라도 통과가 돼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사이 연구 현장에서 중단된 여러 사업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법은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국가 R&D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법안과 관련하여 최수진 의원이 2024년 6월 10일, 정부가 2024년 12월 12일, 이해민 의원이 2024년 12월 19일, 황정아 의원이 2025년 6월 9일 각각 대표발의하였고요. 1소위에서 공청회를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 2월 26일, 4월 16일, 5월 8일, 7월 7일에 걸쳐서 정말꼼꼼하게 심사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기재부가 예타 면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하고 심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법안 내 주신 최수진 의원님, 이해민 의원님, 황정아 의원님 그리고 이 법 통과시키자고 저희들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계속 설득하신 최형두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AI 기본법 이후 과학기술 관련하여 과방위가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정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5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방송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사실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도권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가 그만큼 민심을 얻지 못한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KBS하고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KBS와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훌륭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있지 않은데 이 법안의 목적이 KBS 사장을 교체하고 또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겠다는 속내가 부칙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의 부칙을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칙 2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이번에 도입이 돼 있느냐면 법에 보면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장을 교체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분의 3의 의결로 이사들이 KBS 사장 바꾸겠다고 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서 KBS 사장을 바꾸겠다는 게 이 법에 사실상 다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우리는 방송장악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KBS 사장 임기 3년 보장하시면 돼요. ‘우리 건들 생각 없다’.

KBS 사장 임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칙을 통해서 KBS 사장 교체를 한다면 그게 방송장악하는 거지 뭡니까? 그게 방송장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말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통합’, ‘우리는 방송장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칙 만들어 가지고 사장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칙 3조를 보면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조·21조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보도책임자를 3개월 이내에 교체하도록 부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TN하고 연합뉴스TV는 보도와 관련된 채널이에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요, 이런 조항을 다 넣어 놓고?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라고요, 이렇게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말고. 그래 놓고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독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방위가?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협치하겠다는 말. 협치하겠다고 그러면 협치를 하세요, 정말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좋아요. 저희도 인정할게요. 그러면 국민에게 방송을 진짜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보자 이게 협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노조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합의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사장들 다 바꾸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협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과방위원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제가 발언하고 나면 저보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실 텐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몇 가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YTN과 연합뉴스TV만 해당됩니다. KBS와 MBC, EBS는 공영적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장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요. 100인 이상 여론조사 추출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이 점 알려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만 그런 제한 규정을 뒀다. 그것은 거꾸로 노사가 합의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국힘 위원은…… 이 법안 똑같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법안과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당이 돼서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똑똑히 기억하고 영상도 돌아다닙니다.

노종면 위원님, 5분 드리십시오.

○노종면 위원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먼저 가로채셔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과방위 내에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단적으로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어요.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소위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모르세요.

○박정훈 위원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뭘?

○위원장 최민희 지금은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KBS·MBC·EBS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제가 언제 KBS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세우세요.

○박정훈 위원 지금 위원장이 그렇게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거지.

○노종면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박정훈 위원 여기 그렇게 다 써 있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세웠습니다. 세웠으니까 하세요.

○박정훈 위원 그렇게 꼭 사람 바보 만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우리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안 들어오셨잖아요.

○박정훈 위원 제가 소위 위원이에요?

- 노종면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무슨 협의를 해요?
- 박정훈 위원** 안을 다 짜 놓고서……
-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 내용 자체가 틀렸는데 협치도 안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 박정훈 위원** 법안 내용 뭐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언제 KBS라고 얘기했어요?
-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시지요!
-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최민희**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 노종면 위원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 나가서 5분 동안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위원들이 계신 것 같기 때문에 핵심을 설명드리세요. 그리고 이것 끝난 다음에……
- 노종면 위원** 아니, 박정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 박정훈 위원** 제가 KBS도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 김현 위원** 속기록부터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민희**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 김장겸 위원** 아니, KBS가 신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칙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민희** 지금 부칙 얘기 하고 있지 않고요.
-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말의 큰 흐름을 봐야지 말의 그것을 딱 잡아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민희** 속기록 가져오십시오.
-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박정훈 위원** 법안까지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법안까지 읽어 드렸잖아요.
-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이따가 다시 5분 드릴까요? 아니면……
-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 김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속기록 볼 때까지?
- 위원장 최민희** 이것 확인하고요. 노종면 위원님은 이것 확인한 뒤에 발언하시지요.
- 노종면 위원** 예.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아까 누가 먼저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김장겸 위원님이 먼저……
- 김장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최민희** 예, 먼저 하세요.
- 김장겸 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은 빼고 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노종면 위원이 중단했으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요.

○김장겸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봉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들이 사장 추천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다수제로 해서 두세 명을 복수 추천하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안 되면 결선투표를 거치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거쳐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과거보다 엄청 진일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때의 기조나 여러 가지를 민주당은 그대로 이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인물이 사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아쉽고 좀 더 강화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정치권 추천 봉이 40%인데 더 줄여서 정치권 추천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소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아쉽고.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 MBC—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4개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

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 몫을 좀 더 줄이는 문제라든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종편하고 민영방송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향후에 법 개정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반영이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 배경에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실상 방송사의 대부분의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굉장히 공정하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좌파 진영은 오랫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87년 입사인데 입사 이후로 계속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을 보면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 학회조차도 꿀 먹은 병어리입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임직원 3명, 2명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단체. 이것은 사실상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단체는 왜 이렇게 또 뜯금없이 들어갑니까? 이 모든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공영방송이 돌아가는 겁니까? 변호사 단체가 어떻게 방송과 관련이 있고…… 이게 민변의 어떤 로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채널이요? 보도채널 좋습니다. 말이 보도채널이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안을 법제화를 해 놨습니다. 이것 YTN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 협상하에서 자율적으로 임명동의제를 하든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 법으로 해 놓으면 결국 민영방송사인 YTN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리고 편성위원회 문제도 그래요. 편성규약이나 이런 걸로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편성위원회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또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방송 경영, 방송 편성이 과연 노조가 주도해서 노조가 책임질 일입니까?

여러분, 노조는요 언론노조든 어떤 노조든 결국은 저희 정당보다 국익에 대해서는 더

우리보다 못할 겁니다. 결국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가 만약에…… 아니, 편파보도에 관해서 노조가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편파보도에 관해서 경영진이나 사장이 물러났으면 물러났지 그렇게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온갖 편파보도를 주도하게끔 한 언론노조가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바에는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냥 민주당에서 이사들을 전원 추천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에서 전원 추천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책임정치고 차라리 책임방송이 아닌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는가.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언론노조의 전횡을, 지금도 가까운 주먹이 무섭다는 식으로 장악한 구조 내에서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고 보도책임자나 다른 주요 책임자들의 임명동의를 할 수 있는 언론노조가 언론노조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어떤 형태로 견제합니까?

또 하나, 언론 종사자들이 국민을 대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은, 방송 종사자들은 방송 종사자일 뿐이에요. 국민을 참칭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MBC 제2노조나 KBS 제2노조도 그런 거지요?

○김장겸 위원 일종의 이익단체지요.

○위원장 최민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녹취록 나눠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이쪽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는 마시고…… 제가 이익단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물어본 거지요.

나누어 드리세요. 이게 노종면 위원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녹취해서 가져왔습니다.

발언 시작하실래요?

○노종면 위원 마이크 주세요.

제가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담겨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해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내용을 보면 일단 KBS하고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KBS와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KBS 두 번 언급하셨고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왜 협치를 안 하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하실 수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 그리고 제가 소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협치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 나아갈 과제이지 지금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한 분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입장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논의 구조에 아예 안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제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당에 협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지금 노조 문제라든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개인의 판단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집단을 적대시화하거나 또는 그런 말씀을 듣고 혹시 누군가가 혐오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다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로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조합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관되게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지, 특히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국회 추천 봇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세요.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는 정치 후견주의 줄이겠다더니 왜 국회가 직접 추천하냐고 하셨지만 또 존경하는 최형우 간사님께서는 한민수안이면 협의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면 그때 또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부 입장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논의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과 기준에 방통위가 임명하던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선출된 대표기관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비율의 추천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토론을 해 왔고 그런 방안을 잡은 거지요.

방통위는 어땠습니까? 방통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대통령 임명권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공모하고—공모라는 그런 명분으로 마음대로 임명했던 거지요—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온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각각 다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적대적으로 너무 싸잡아서 비판은 안 해 주셨으면, 비난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 1분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박정훈 위원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박정훈 위원 아니, 제가 정정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정정한다고요. 정정할 테니까 그만 읽으셔도 되고 제가.....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일단 읽어 주고 정정하세요.

‘내용을 보면 일단 사장추천위원회, KBS하고 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KBS와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훌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보도전문채널만 노사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는 의무이고 100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 100명은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라고까지 부연했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녹취록이 맞지요? 아닌가요?

○**박정훈 위원** 1분만 주세요.

녹취록인데 뭘 부인을 해요, 이것 녹취록 다 나와 있는 거를 두 번이나 확인 사살하시면서.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1분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건지…… 이거는 별로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1분만 달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왜 줘요, 지금?

○**노종면 위원** 스스로 정정하신대요.

○**박정훈 위원** 정정하겠다고요.

○**위원장 최민희** 정정하세요, 1분. 정정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제가 보도채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다가 KBS하고 불여서 얘기한 거라는 설명을 다시 드리고 제 발언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 들어 있는 지금 사장들을 퇴임시키는 문제 그리고 보도채널의 편집국장을 동의하게 법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말씀 안 하셨는데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장들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2분을 덜 쓰셨으니까 2분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법안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을 통해서 제로 세팅됐습니다.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 제로 세팅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두 분, 두 분 하셨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 이 방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 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법

안2소위 위원장께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아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신성범 위원 아니, 이것 앞에 깔려 있고 다 했는데 설명 절차가 왜 필요해.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자료를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 지금 국힘 위원들 공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2소위 위원장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세요.

○이상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장겸 위원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학생들도 아니고, 하지 맙시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하십시오. PPT 띄우세요.

○김현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타임라인부터……

○이상휘 위원 아니, 우리가 공부 안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 일을 해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김현 위원 저 발언권하고 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고 하는 거예요.

○신성범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상휘 위원 뭘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이것 세우세요.

○신성범 위원 진행을 왜 이렇게 하세요?

○김장겸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휘 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학생들도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양쪽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숙지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성범 위원 그거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이상휘 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공론화시켜 가지고……

○위원장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2소위 위원장께서 내용은 이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 한 분이라도 숙지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숙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신성범 위원 진행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이상휘 위원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최형두 위원 이게 김현 간사의 발언 시간이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제가 드립니다.

제2소위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제가 진행합니다.

○최형두 위원 발언 시간 하세요. 발언 시간 주세요.

○김현 위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이상휘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김장겸 위원 최민희의 전당이구먼, 최민희의 전당이야.

○김현 위원 PPT 띄우세요. PPT 띄우시라고요.

○**이상휘 위원**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 자체에 아무런 공부도 않고 준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휘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민희**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빨리 하세요.

○**이상휘 위원** 2소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핵심을 다시 설명해라, 지금 국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김현 위원** PPT 띄우세요.

○**이상휘 위원** 뭔 PPT 띄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현 위원** 앉으세요.

○**이상휘 위원** 뭘들 앉아?

○**최형두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현 위원** 제 발언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에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이상휘 위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최수진 위원** 아니, 아무도 듣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현 위원**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5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김현 위원** 왜 발언 내용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이상휘 위원** 민주당만 국민입니까?

○**최형두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하세요. 다 발언하시고. 5분 동안 발언하시면 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앉으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왜 발언을 방해합니까? 제 발언 시간이잖아요.

○**이상휘 위원**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김현 위원** 뭘 만들어요?

○**이상휘 위원** 국힘은 방송에 대한 공부도 안 했으니까 여기에 자격도 없다 이 뜻 아니에요!

○**김현 위원** 이상휘 위원님 2소위 할 때 나가셨잖아요.

○**이상휘 위원** 왜 나갔어요?

○**김현 위원** 나가셨어요.

○**이상휘 위원** 그 절차가 올발랐습니까? 절차 따져 볼까요?

○**김현 위원** 아니, 2소위 때 나가셨다고요.

○**최형두 위원** 항의해야지. 항의 발언을 해야지, 항의 발언을.

○**김장겸 위원** 다 나와. 아니, 뭘 이런 회의에 응하고 있어. 나와.

(일부 위원 퇴장)

○최형두 위원 나가세요. 난 할게.

김현 위원 발언 끝나고 이상희 위원 하세요. 하시고 낱낱이 국민들 앞에서 이 문제가 뭔지를 토론합시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김현 위원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권태선 이사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MBC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을 자르고 박민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 날 방통위는 YTN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해서 사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2인 구조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MBC 방문진 이사의 졸속 선임이 위법하다 해서 MBC 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날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를 통해서 KBS를 친윤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방송법과 방문진법과 EBS 공영방송 3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2024년 하반기 내내 논의를 했고 그리고 거부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있어서 개정법 관련 논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노조와의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의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2소위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천단체는 국회에서 위원설관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해서 비율을 배정해 가지고 국회 추천 몫으로 하고 방송법에 명기돼 있는, 시청자위원회·시민사회단체·법조계 등이 포함돼 있는,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돼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임직원을 포함해서 과반 이상을 얻는 세 사람이 종사자 대표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회는 공신력 있는 방송미디어 3학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기타 심사 위원회 규정에서 법조계 대표를 받은 사람을 저희가 추천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가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후보를 다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제청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BS·MBC는 그동안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KBS·MBC·EBS에 한해서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이 내용은 방송법의 적용이 되는 KBS와 방문진법이 적용되는 MBC와 교육방송법이 적용되는 EBS가 공히 같이 적용되나 이사의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앞서 얘기했던 2024년도 2월 7일 날 불법적으로 진행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노총면 위원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에 다음 이사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 이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도 부칙 조항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방송 3법은 2016년부터 논의가 됐고 성사를 못했던 법이 지금 이번에 진행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제가…… 추가됐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위원장 최민희 다시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김현 위원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먼저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방송 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 이상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만……

○김현 위원 잠깐만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2소위 때 방통위 사무처의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것은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사례를 연구하

라고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영관 처장 나와 보시지요.

법안소위에 참석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방송 3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까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게 발효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아니, 직속기구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 주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소속기구입니다. 직속 아니에요.

○김현 위원 그리고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방송 3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영관 처장 나와 보세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대통령실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국무회의에 나온 내용, 발언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래서 공식적인 지시로 저희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발언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 정도였다고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방통위에서 방송 3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할 텐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과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것은……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

예요. 지금 저 요지는 해외 사례까지 다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한 일주일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일주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이행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민은……

○**위원장 최민희**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이름 적으세요.

발언할 분들, 왜냐하면 순서 잡으려고요.

○**이상휘 위원** 제 차례인데요?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5분 드리세요.

○**이상휘 위원** 참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 과방위원 7명 중에 단 두 분이서 지금 반대토론을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방송 3법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장께서는 공부가 안 됐다는 등의 그런 표현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힘 위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형태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저는 방송 3법의, 오랫동안 방송계를 봐 왔고 또 같은 언론 쪽에 종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이 방송 3법은 어떤 의미를 따지자 그러면 이게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의 전리품을 쟁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정 세력에게,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지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세력이 그것이 언론노조든 민노총이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이 방송법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방송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준사법권이 여러 가지, 검찰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준사법기관들의 수사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그런 형태의 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권이 행정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권은 말할 나위 없이 190석의 거대 여당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3권은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 하나만, 1권의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견제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 부분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방송·언론이 특정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독재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백악관 출입했던 헬렌 토머스는 2013년에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 명언

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주가 된다’. 여기서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정 세력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언론성과 독립성, 그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3법,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는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노조의 강령에는 편집과 편성권의 쟁취가 그 목적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그런 식으로 편중된 식으로 왜곡돼서 개악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방송은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히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영구 장악도 가능해집니다. KBS 이사회의 전체 이사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가량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관계없이 KBS의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계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의 친민주당·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서 특별다수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것은 지금까지 이십몇 년 동안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켜 오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섭단체는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 추천하고 의석의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이상희 위원 이 경우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4조 2항의 규정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방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의무와 심의 규정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재개정을 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심의에 있어서 반영하고 별도로 규정한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을 통해서 관련 의무가 신설된 대상은 텔레비전방송 지상파사업자 30개, 종합편성PP 4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3개입니다. 이럴 경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운영의 자율성,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의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 민영방송 그 자유 침해, 과잉입법에 소유주와 이사의 권한 및 주주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 부르지 마세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가 공부하지 않고 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이상휘 위원 그게 그 말이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게 그 말이라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부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휘 위원 비틀지 마세요.

○김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릴게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통령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 3법에 대한 안을 준비해 보라라고 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개적인 오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가 준비는 좀 해 봄아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걸 제출하라라고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의 논의가 된다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 여야의 논의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라도 똑같이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논의됐던 이 내용을 무시하고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결론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건지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은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일단 물어 드릴까요?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일단 김영관 처장 말 듣고 방통위원장 말 듣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를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 사무처장대행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발언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 입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김현 위원** 아니, 있으면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이 잘 정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하라는 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과제는 검토를 지시를 하셨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제출했잖아요, 이미.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방통위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방통위에서 추진이 되려면 위원회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원장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독립된 입장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자꾸,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과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것과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방통위가 제출했다는, 지금 이 스토리의 맥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통령께서 방송 3법에 대한 위원회의 안을 지시했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 안을 만들라고 위원장이 사무처에 지시했고 그리고 사무처는 그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저희 방통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그 방통위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시거나 만약에 제출 못 하면 열람하시도록 하지요.

○**김현 위원** 오늘 4시 반에 보고받지요, 뭐.

○**위원장 최민희** 예. 그러면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 4시 반에 당정협의 있기 때문에 그 때 보고받고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본인들 말만 하고 다 나가 버리는지, 본회의장에서도 의결만 하려면 나가 버리고 그러시는데 습관성 아닌지……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런 자세는, 저희들이라고 미안합니다만 말 같지 않은 말씀 듣고 있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다 의견이라고 듣고 있는 건데 본인 얘기하고 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협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

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대상을 다양화하고 추천 할 때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 하고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국민들로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꼭 10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고, 이게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장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1 야당의 태도예요. 말씀 듣다 보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소수 여당 할 겁니까, 소수 야당? 영원히 국민 다수로부터 미움받고 비판받고 배척받을 생각입니까? 정치 잘해 가지고 저런 탄핵받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 내란 일으키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통령 만들어서 집권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어찌 돼 가지고 특정 정파를 돋는다, 특정 어디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분들 지지받을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윤석열·김건희가 망친 것처럼 공영방송 체제를 그냥 놔두고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는 똑같이 하라는 겁니까? 안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혹시라도 집권 기회가 오면 그 상태로 그냥 또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논리로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바꾸면 안 된다, 일점일획도, 반대하고. 야당이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지금 법안들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협의해서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토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제1 야당 국민의힘 위원들 뭔 안을 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면서요. 그대로 가 가지고 지금의 제도가 방통위원장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방송이 저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화시켜야지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이고 반드시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첫째는 건전한 토론을 할 때는, 협의할 때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전체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데 또다시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숙지가 안 된 내용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그리고 본인들 얘기하고 다 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협치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기회로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생산적인 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제1야당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선한 의도 또 좋은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생사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워낙 많이 보는데. 제가 보는 이 방송 3법의 문

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3법의 요체는 줄이면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그리고 15명 중의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KBS 직원들이 뽑고 또 관련 학회에서 뽑고 또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MBC와 EBS, 교육방송과 문화방송의 이사들도 13명으로 늘려서 5명은 국회에서 뽑는다는 건데 지금하고 뭐가 다른 거냐. 현재 KBS 이사 11명은 흔히 여 7 야 4, 7 대 4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KBS의 이사의 경우.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KBS·MBC·EBS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어찌 됐건 방통위의 제청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냐……

물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이게 적어도 방통위가 정당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법문화, 조문화를 만들어서 국회의 추천을 6명, 5명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큰 틀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아마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안 해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걸 법으로 묶어 놓을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의석 분포대로 하면 KBS 이사 6명, 국회 추천 6명은 4 대 2가 될 것이고 EBS와 MBC는 3 대 2가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게 옳은 거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지금도 방통위 구성도 의석 분포대로 받고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비공개적으로 거기서 처리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국회 의석 수 배분대로 가게 되면 완전 정파적 투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바로 인입된다, 정치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KBS 이사 11명은 지금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파와 진영에서는 더욱더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다. 왜냐? 방송계의 현실이 방송의 협업자, 시청자위원회, 학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진영의 대결의 영구화로 이어진다. 공고화다. 제 눈에는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KBS 이사의 경우,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는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응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대통령의 지시사항,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와 보라 한 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신성범 위원 큰 취지라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당연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조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만 하시지요, 다 들었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위원장 최민희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 3법 논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실 보좌관 오라고 하세요.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김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안 할 때 동일하게 질문을 했는데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가 세 가지입니다. 임기를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전환해 달라 그다음에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대통령과 본인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독임제 기구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이 소모적이다. 그래서 독립성 보장을, 불만을 제기했고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했고 이 때 독임제가 낫겠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아까 얘기했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송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임기 보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방송장악, 언론장악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

하면서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방송 개혁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라고 했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3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그 지시가 정확하게 19일이 아닌 또 다른 날짜에 있었는지를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 놓고 방송을 장악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KBS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흘 동안 박장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었고 과연 공영방송을 책임질 만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 결과 윤석열 정권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기자로서의 날카로움도 무뎌진 사람은 KBS 공영방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김건희가 받았던 명품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후보자는 도저히 KBS의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아랑곳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친여당 성향, 국민의힘에 편향된 KBS 이사회는 그런 후보자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더불어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자질도 없고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의지와 소신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공영방송을 책임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비위 맞추는 사람 사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KBS 사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정권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와 연결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송을 장악했던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박민 전 사장과 또 박장범 현 KBS 사장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를, 노사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방송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명문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신문·방송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잘해 왔던 임명동의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것들을 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문화해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사주라든지 경영진들로부터 자유롭게 진실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시기 조절을 하면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만 이번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보도책임자에 대한 동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는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가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보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제작책임자에 대해서도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책임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제작책임자들도 공정하게 또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돼야 되고 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또 시기 조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이런 시도들이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하기 위한 방송 3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위딩이에요, 답변 온 것.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요?

(「표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지금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아까 박정훈 위원이 KBS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고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것은 부칙에서 이사회 구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KBS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KBS 넣고 또 더 나아가서 숙지가 안 됐다고 해서 한 것은 같은 위원끼리 그것은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니, 팩트 정정을 왜 무시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팩트 정정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어떤 중립성, 국민한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 과도한 추천권이 부여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의 15명 중 6명, EBS·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13명 중의 5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교섭단체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신성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국회 추천 뜻으로 했었다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독일 연방현법재판소는 ZDF 중 방송국의 정치권 추천 이사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국회 추천 뜻을 3분의 1 이하가 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KBS의 경우 40%, EBS·방문진의 경우 38%를 국회 추천 뜻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미 국제기준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노조,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권까지 다 더해질 경우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조가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이나 연합뉴스TV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모하고 SBS, 종편,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편성 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및 재허가 불이익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송 전 영역에 정치권과 특정 집단의 그런 통제 장치를 심어서 공영하고 민영 방송 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 구성, 국제기준 등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고

정치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권력 감시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선임권, 이사진 구성, 편성권까지 특정 세력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자유 그리고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심히 위협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하고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답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5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저는 방송법 이 논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우리 방송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지금은 1인 체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논의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5인 체제의 회복을 신속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결원인 1명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를 해서 3명의 추천 뜻을 임명함으로써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방송의 모든 문제는 바로 2인 체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2인 체제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에 모든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지난 정부 초기에 최민희 위원을 법제처가 7개월 동안 답변을 보류한 데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당시 법제처장한테도 굉장히 항의한 적 있습니다. 아니, 이해상충이 있으면 이해상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해서 안 된다 그러든지, 이해상충이 없으면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7개월 동안 미루어서 방통위 체제를 과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년여 지나서 1년 반 동안은 민주당이 과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때 지금 문형배 전 재판소장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 위원은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회는 아직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체제에서 무슨 생각으로 또다시 결원이 된 방송통신위원 여야 추천도 미루고 또 이제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 지금 대통령 뜻 1명이 남았는데 대통령은 왜 신속하게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입니까?

오늘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마치 우리 당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참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말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위임받지 않은 기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기구·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국민이 위임했습니까? 방송 종사자, 국민이 위임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방송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 정치 후견주의라고 규정하는 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기구·단체가 방송을, 특히 공영방송을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조차도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을, 그냥 사병 출신 국회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민통제의 원칙이 군에서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 역시 국민의 위임에 따라 선량한 권리 의무를 위임 받은 자들, 바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위임 구조를 초가삼간처럼 태우고 교각살우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공영방송 내에서도……

1분 더 주세요.

노조 간의 갈등, 무엇보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 내에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 오요안나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또한 노조가 노조끼리 싸우고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역대 국회가 글로벌 표준에 따라 확립한 것입니다. 다 BBC, NHK 구조를 보고 만든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새롭게 포함된 내용 중에 위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뭐냐하면 노사동수 편성 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8월 31일 날 선고한 2019헌바439 사건이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방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이번 법안 추진에 좀 더 숙의해 주시기를 여당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PPT 띄우세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면)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일단 현행법은 정치권이 100% 이사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관여합니다. 이

것 이번에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적으로 관여하는데 정부 여당 측 이사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과반으로 사장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 끊겠습니다.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이 KBS 6명, 방문진 다섯, EBS 다섯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 명 추천하게 되나? 4명 하게 됩니다. 4명이 15명 못 움직입니다.

세 번째, 저기 쭉 나와 있지요. 30% 못 미칩니다.

그 외에 시청자위원회 추천 2인, 시청자위원회 법적 기구 아니라고 하셨지요? 법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시민단체가 구성한다고요? 숙지 못하신 거예요. 사장이 합니다, 사장이, 현재는. 저희는 앞으로 이것도 노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종사자 추천, 이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과반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노조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법 밖에 있다고요? 노조는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박장범 사장이 KBS 하게 되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까지 시민단체다, 민노총이다, 여기 민노총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부 종사자 추천, KBS에 노조가 몇 개입니까? 결국은 하나씩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디 민노총이 3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학회, 변호사 단체 왜 넣었느냐? 그나마 방통위에서 우리가 일할 때, 각급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학계와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때. 김현 간사도 그때 받았다고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표성을 가진 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어디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보세요. 이게 무슨 국민께 돌려드리는 겁니까? ‘시청자단체에 돌려드린다’ 혹은 ‘변호사한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내부 종사자한테 주는 것이다’, 왜곡되게 해도 그 정도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국민께 돌려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해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00명 이상 참석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장후보자 경영계획 발표하고 면접, 숙의토론 과정 등 민주적 방식으로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5분의 3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고 만약에 시간, 14일 초과하면 결선투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사장 뽑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전혀 의외의 사람이 됐잖아요. 100명한테 누가 작업할 수 있습니까?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요약된 요약본이고요.

나머지 내부 자율성을 보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방송국 종사자를 못 봤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방송 기자들이나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최대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장 그리고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하게 하겠다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성범 위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반대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

○최형두 위원 반대합니다.

○신성범 위원 반대합니다.

○최형두 위원 표결 안 합니까?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그게 아니라 대안을 올리는 건데요. 표결을……

○최형두 위원 대안을 올리는 것도, 대안도 반대합니다.

○신성범 위원 반대한다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하지요.

○노종면 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빨리빨리.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해요. 됐습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최민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김현 위원 아니, 2소위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예, 이건 2소위 활동을 반대……

○김현 위원 2소위 활동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2소위 위원들께서.

○위원장 최민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김현 위원** 내용을 반대해야지 절차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절차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최형두 위원** 내용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김현 위원** 회의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최형두 간사님?

○**위원장 최민희** 아, 반대 3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올리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님, 이것 법안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김현 위원** 아니, 어떻게 상정하는 걸 반대합니까? 법안 상정을 반대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것 상정하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진행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상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왜 안 돼요?

○**김현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위원장 최민희**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표결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잘못 반대했으면 그냥 취소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현 위원** 이때 반대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법률안 의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성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있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 반대 3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들어오시지요, 과학기술기본법 할 건데.

○**신성범 위원**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절차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뭘 다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계세요, 반대하셔야지.

○**신성범 위원**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현 위원** 반대하지 말아야 될 걸 반대하니까 위원장이 헛갈리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헛갈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것 같이하겠습니다, 1항부터 35 항.

법안별로 의결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부터 33항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4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 위원** 빨리 이의 있다고 하셔야지요, 아까처럼.

○**위원장 최민희** 빨리 있다고 하세요.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술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

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 이용마 기자가 유언처럼 남긴 국민 참여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이제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 법에 포함된 새 제도 가운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영방송과 종편들이 이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협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장치가 된 편성위원회를 통해 공고하게 안착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계속 논의할 것이며 편성위원회를 통한 도입 그리고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한 가점 등이 이루어지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방통위규칙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보도와 제작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참석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상임 장관께서는 관련된 인사말씀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R&D 혁신 폐지와 후속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은 기존 대비 2년 이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 등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법 개정안 의결로 유료방송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에도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제가 우리 과방위에 마지막 출석을 하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1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사실 정치적인 격변기에 상당히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디지털 시대에 우리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롯이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와 그런 책임감으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조금은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다 그만큼 열정으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과방위가 협조해 주셔서 5개의 기본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속 시행령 마련에도 우리 과기정통부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AI컴퓨팅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진짜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해서 올해 본래 예산이 1.8조 정도였는데 2조 이상의, 추경 1·2차에 걸쳐서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야 위원님들, 지금 또 뒤집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큰 협조를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해졌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5년이 저는 대한민국의 참 큰 위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AI 대전환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글로벌 구도를 바꿀 텐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국회 전체에서 과방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새로운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부총리제로 격상되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5% 이상 할당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엄청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묵묵히 따라 준 우리 과기정통부 직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그리고 과학계 R&D 협약 면제를 이뤄 내시는 장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방송 3법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 4명을 임명하는 데 여기 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1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영관 처장 나오셔서 법안에 대하여 입장 발표하십시오. 법안에 대하

여, 오늘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방통위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 3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원회 관계자들, 그 외의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과 그리고 과방위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정책기획관 전영수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 김성우